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06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6개사, 부가통신 30개사)가 제출한 '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신이용자정보 >>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5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55,523건(1,306,124→1,461,647건, 11.9%) 증가하였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5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424건(258,622→349,046건, 35.0%) 증가하였다.

<< 통신제한조치 >>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5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01건(2,741→3,042건, 11.0%) 증가하였다.

붙임 : ‘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담당 부서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붙임 '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I.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 개 요

수사기관 등이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 (제공요청 사항)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인적사항
- (주요 절차) 판사, 검사, 수사관이나 정보수사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이 결재한 정보제공 요청서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

□ 총괄 현황

- '25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461,647건, 문서 수 기준으로 534,070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155,523건(1,306,124→1,461,647건, 11.9%), 문서 수 기준 54,738건(479,332→534,070건, 11.4%) 각각 증가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2.7개로 전년 동기(2.7개)와 동일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 2,685건(266,904→269,589건), 경찰 139,883건(971,251→1,111,134건), 기타기관 18,742건(50,900→69,642건) 각각 증가, 국정원 3,331건(14,341→11,010건), 공수처 2,456건(2,728→272건) 각각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 6,688건(58,480→65,168건), 경찰 48,275건(391,649→439,924건), 기타기관 29건(27,697→27,726건) 각각 증가, 국정원 216건(1,406→1,190건), 공수처 38건(100→62건) 각각 감소

(단위 : 건)

구 분		'24년	
		상반기	하반기
검 찰	전화번호수	263,546	266,904
	문서수	52,946	58,480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5.0	4.6
경 찰	전화번호수	1,033,515	971,251
	문서수	394,807	391,649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6	2.5
국정원	전화번호수	9,595	14,341
	문서수	1,287	1,406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7.5	10.2
공수처	전화번호수	250	2,728
	문서수	53	100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4.7	27.3
기타 기관*	전화번호수	54,212	50,900
	문서수	27,751	27,697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0	1.8
합 계	전화번호수	1,361,118	1,306,124
	문서수	476,844	479,332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9	2.7

* 기타 기관 : 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관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등)

(2) 통신수단별

-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유선전화 131건(9,847→9,716건) 감소, 이동전화 40,433건(408,828→449,261건), 인터넷 등 14,436건(60,657→75,093건) 각각 증가

(단위 : 문서수)

구 분		'24년	
		상반기	하반기
유선전화		11,330	9,847
이동전화		413,955	408,828
인터넷 등*		51,559	60,657
합 계		476,844	479,332

* 인터넷 등 : 인터넷접속, 이메일 등

II.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 개 요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3조의4)

- (제공요청 사항)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시간,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발신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에 해당되는 통화내역
- (주요 절차)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
 -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상황 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지체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제공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

□ 총괄 현황

- '25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전화번호(또는 아이디) 수 기준으로 349,046건, 문서 수 기준으로 189,148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또는 아이디) 수 기준 90,424건(258,622→349,046건, 35.0%), 문서 수 기준 28,101건(161,047→189,148건, 17.5%)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1.8개로 전년 동기(1.6개) 대비 0.2개 증가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 29,873건(57,418→87,291건), 경찰 54,342건(194,033→248,375건), 국정원 3,488건(2,225→5,713건), 기타기관 2,859건(4,603→7,462건) 각각 증가, 공수처 138건(343→205건)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 8,494건(24,590→33,084건), 경찰 19,253건(133,295→152,548건), 국정원 7건(166→173건), 기타기관 406건(2,865→3,271건) 각각 증가, 공수처 59건(131→72건) 감소

(단위 : 건)

구 분		'24년	
		상반기	하반기
검 찰	전화번호수	60,319	57,418
	문서수	26,168	24,590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3	2.3
	전화번호수	225,449	194,033
경 찰	문서수	142,058	133,295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6	1.5
	전화번호수	3,088	2,225
	문서수	162	166
국정원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9.1	13.4
	전화번호수	142	343
	문서수	51	131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8	2.6
공수처	전화번호수	4,114	4,603
	문서수	2,287	2,865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8	1.6
	전화번호수	293,112	258,622
기타 기관*	문서수	170,726	161,047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7	1.6
	전화번호수		
	문서수		
합 계	전화번호수		
	문서수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전화번호수		

* 기타기관 : 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등)

(2) 통신수단별

-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유선전화 2,076건(15,730→17,806건), 이동전화 18,881건(130,295→149,176건), 인터넷 등 7,144건(15,022→22,166건) 각각 증가

(단위 : 문서수)

구 분		'24년	
		상반기	하반기
유선전화		19,059	15,730
이동전화		134,925	130,295
인터넷 등*		16,742	15,022
합 계		170,726	161,047

* 인터넷 등 : 인터넷접속, 이메일 등

Ⅲ. 통신제한조치 협조

□ 개 요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9조의2)

- (확인 사항) 통화내용, 전자우편 등
- (주요 절차)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고,
 -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 받되,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 ※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취득한 자료 폐기

□ 총괄 현황

- '25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042건, 문서 수 기준으로 32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301건(2,741→3,042건, 11.0%), 문서 수 기준 1건(31→32건, 3.2%)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95.1개로 전년 동기(88.4개) 대비 6.7개 증가

□ 세부 내용별 현황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국정원 312건(2,720→3,032건) 증가, 경찰 10건(20→10건) 감소, 문서 수 기준으로 국정원 1건(24→25건), 경찰 1건(6→7건) 각각 증가

구 분		'24년		'2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경 찰	전화번호수	-	20	8	10
	문서수	-	6	5	7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	3.3	1.6	1.4
국정원	전화번호수	5,276	2,720	5,780	3,032
	문서수	34	24	29	25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55.2	113.3	199.3	121.2
기타 기관	전화번호수	2	1	2	-
	문서수	2	1	2	-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	1	1	-
합 계	전화번호수	5,278	2,741	5,790	3,042
	문서수	36	31	36	32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46.6	88.4	160.8	95.1